



The Spanish Group LLC
1 Park Plaza, Suite 600
Irvine, CA 92614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thespanishgroup.org>

Certified Translation

Furnished on the **17th** day of **January, 2020**

I, **Jung Woon Whang** (*JW*), hereby certify that I translated the attached document from Korean into English or English into Korean and that this translation is an accurate and faithfu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Furthermore, I certify that I am proficient in translating both Korean and English and that I hold the capacity to render and certify the validity of such a translation. This document has not been translated for a family member, friend, or business associate.

I, **Salvador G. Ordorica**, as a Quality Assurance Agent of The Spanish Group LLC, hereby attest that the aforementioned translator is a proficient Korean-English translator. Accordingly, a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Spanish Group, I verify that I have proofread this document and I certify that the attached document is a faithful and authentic translation of its original.

Respectfully,

Salvador G. Ordorica
The Spanish Group LLC
(ATA #267262)



The Spanish Group LLC verifies the credentials and/or competency of its translators and the present certification, as well as any attached pages, serves to affirm that the document(s) enumerated above has/have been translated as accurately as possible from its/their original(s). The Spanish Group LLC does not attest that the original document(s) is/are accurate, legitimate, or has/have not been falsified. Through having accepted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order to contract The Spanish Group LLC's services, and/or through presenting this certificate, the client releases, waives, discharges and relinquishes the right to present any legal claim(s) against The Spanish Group LLC. Consequently, The Spanish Group LLC can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by the Client(s) or any other party either during, after, or arising from the use of The Spanish Group LLC's services.

6.05 장 고객 청구 절차

6.05.010 요금율 및 요금 설정.

이사회는 때때로 결의에 의해 Hi-Desert Water District 가 제공하는 용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요금율 및 요금을 정합니다.

6.05.020 청구.

상수도 연결이 설치되면 고정 월 요금이 시작됩니다.

6.05.030 사용된 물에 대한 책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역구에 서면으로 통지할 때까지 고객은 사용한 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6.05.040 미지급 청구에 대한 유치권.

재산 소유자의 이름으로 지불되지 않은 모든 청구서는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캘리포니아 상수도법 섹션 31701.5 등에 따라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갖습니다.

6.05.050 계정의 책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은 지역구에 부과된 모든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05.060 청구 기간.

정기 청구 기간은 지역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5.070 별도의 요금 청구가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계량기 설치마다 별도의 청구서가 제공됩니다. 지역구는 자체 편의를 위해 각 복합 계량기 레지스터를 별도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여기에 제공된 대로 청구합니다.

6.05.080 지폐 개설 및 마감.

정상 청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에 개설 및 마감된 청구는 비례 배분됩니다. 지역 결산 청구서는 서비스가 중단 된 시점에 고객이 결산 청구서를 지불 할 수 있도록 편의로 최종 기간 동안 지역에 의해 추정 될 수 있습니다.

6.05.090 청구서 지불.

계량 수돗물 요금 청구서는 각 청구 기간의 말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시 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청구서에 기재된 최종 결제일 전액을 구청 사무소에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청구서에 최종 결제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서는 연체 및 체납이 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해지고 수시로 변경되는 금액으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6.05.095 거주 고객을 위한 지불 준비.

일반 결제 기간 동안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해당 지역의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직접 연락하여 연장 또는 기타 대체 지불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나 기타 지불 약정에 대한 결정은 해당 지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 지불 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모든 대체 지불 약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 청구 기간마다 수수료가 부과될 때마다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대체 지불 약정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동안 후속 미납 요금의 다른 대체 지불 약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현행 요금 지불을 포함하여 최소 60 일 동안 대체 지불 약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가 서비스 중단 48 시간 전에 서비스 주소에 서비스 해제 의사를 최종 통지한 후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종 통지서에는 해당 지역의 조사 또는 검토 자격이 고객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6.05.100 모든 고객에 대한 종료 알림.

계좌가 체납된 모든 고객에게 종료 통지가 발송되어야 하며, 체납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비스가 중단될 것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비스 중단 최소 15 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연체료 등 납부해야 할 금액과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우편 주소와 주소가 다른 경우, “입주자”에게 발송된 두 번째 통지는 비 지불로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십오(15)일 전에 서비스 주소로 발송됩니다. 서면 단절 통지 및 탑승자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이름과 주소
- 기한이 지난 금액
-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준비가 필요한 날짜
- 지불 약정 신청 절차 설명
-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절차에 대한 설명
- 고객이 지불 약정을 요청하거나 지역구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화 번호
- 지역구의 요금 및 수수료 정책에 대한 웹 링크.

6.05.105 거주 고객 및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고지.

6.05.100 섹션에서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통지, 주거용 수도 서비스 연결이 해제되기 최소 10 일 전까지, 이 구역은 개별 계량 식 단독 주택 거주자, 다중 주택 주거 구조, 이동 주택,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고객으로 기록이 있는 노동 수용소의 영구 주거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마스터 계량 주거 구조의 경우, 지역구는 또한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10 일 전에 실제 거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탑승자에 대한 통지는 탑승자에게 연체 계정으로 인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지역구는 또한 서비스 중단 최소 7 일 전에 거주지 주소지에 직접 또는 전화로 거주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 고객이나 성인과의 연락을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거주지 주소지에 거주하는 고객이나 성인과의 직접 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역은 거주지 서비스 중단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통지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책 사본을 남기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주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책 사본을 보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통지와 정책은 최소 48 시간 전에 관저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 구역은 고객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연락처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05.110 주거용 세입자가 고객이 되는 절차.

이 절은 주택의 소유주, 지주,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지급으로 인하여 수도 서비스 중단의 의향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각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지역의 규칙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역은 실제 거주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거주자가 지역구의 만족을 위한 계좌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거나, 지역구의 규칙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다면, 지역은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한 탑승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체납 계정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고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 점유자는 체납 고객이 주택의 지주,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구의 재량에 따라, 임대 계약서, 임대 영수증 또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사전 서비스가 지역구와의 신용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거주지 및 임대료의 신속한 지불 증거는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6.05.120 연체 제거.

이 구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연간 1 건의 연체 기록을 계좌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6.05.130 소송.

여기에 제공된 모든 미지급 요금, 요금 및 위약금은 소송에 의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6.05.140 비용.

피고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구에 유리한 판결로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6.05.150 비어 있는 부지.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하는 고객은 구내를 비우기 2 일 전에 지역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주문하지 않는 한 고객은 서비스 중단이 요청될 때까지 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중인 요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6.10 장 요금 및 지불- 일반적으로

6.10.100 부족한 자금 요금 확인.

충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은행에서 반환된 각 수표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6.10.105 반환된 수표 또는 신용 카드 지불 처분 통지.

수표 나 신용 카드, 수역 또는 기타 요금의 지불로 반환된 지불을 받으면, 지역구는 지불되지 않은 계정을 고려하고 반환된 지불 금액을 연체로 간주합니다. 지역구는 고객에게 반환된 지불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환된 수표 또는 신용 카드 지불을 사용하고 반환된 지불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지불된 모든 금액은 원래의 반환된 지불과 다른 지불 방법이어야 합니다. 만기일 이전에 지불되지 않은 지불금으로 지불된 계정은 이후에 반환된 지불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연체된 계정 서비스 요금으로 간주됩니다.

6.35 장, 불만 및 분쟁 청구

6.35.010 만나야 할 권리.

고객이 수도 서비스, 지역 규칙, 규정, 결의 또는 조례와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든 수도 서비스 또는 기타 요금 청구서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일반 관리자 또는 그의 지명인과 분쟁을 논의하고 고객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할 증거를 제시합니다.

6.35.020 공식 분쟁 또는 불만.

고객이 총지배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공식적인 불만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이의 제기 청구서 발송 후 15 일 이내에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불만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분쟁이나 불만은 고객에게 서면 결정을 제공하는 총지배인 또는 그의 지명인이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에는 고객이 연장, 할부 상환 또는 기타 지불 계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의 제기된 청구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청구서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6.35.030 이사회에 항소.

이사회는 적절한 분쟁이나 불만으로 인해 불리한 결정을 내린 모든 고객은 지역구의 최초 결정을 발송 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이사회 비서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사회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접수하면, 이사회 사무 총장은 향후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 10 일 전까지 회의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은 이사회에 출두하여 불만 사항과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사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35.040 행동 지연.

이사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분쟁과 관련된 특별 보고서를 조사하거나 받기 위해 향후 회의에 분쟁 해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6.35.050 이사회에 결정.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사회가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동 불이행은 요청된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35.060 서비스 중단.

고객이 수도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분쟁 또는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수도 서비스를 끊지 않습니다.

6.35.070 빠른 계량기 오류에 대한 조정.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험한 계량기가 해당 지역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험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시간 서비스에 대한 초과 요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중 낮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6.35.080 느린 계량기 오류에 대한 조정.

고객의 요청에 따라 테스트한 미터가 해당 지역의 허용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구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정확한 계량기의 판독값을 바탕으로 과소 요금 청구서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35.090 미등록 계량기.

계량기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비스 요금은 예상 소비량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비교하려는 기간의 해당 지역의 이전 소비량 또는 지역에 의해 결정된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6.40 장, 미납의 경우 연결 해제

6.4.010 미납의 경우 연결 해제.

청구서가 달력으로 60 일 이상 연체 된 경우, 지역구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지역구의 영업소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시간에는 수도 서비스를 끊지 않습니다.

6.4.020 연결 해제 관련 불만 절차.

청구서 미납 또는 지역구의 규칙, 규정, 조례 또는 결의안을 위반하기 위한 서비스 연결 해제는 6.35 장 HDWD 지역 법규에 명시된 불만 절차를 따릅니다.

6.40.030 채무불이행 거부 또는 방임.

지불해야 할 금액은 해당 지역에 대한 채무이며, 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방치하거나, 지불을 거부하는 모든 개인, 기업 또는 법인은 관할 법원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0.040 미지급 재산에 대한 유치권.

부동산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미지급 부채는 본 계약서 및 캘리포니아 상수도법 섹션 31701.5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간주됩니다.

6.40.050 위반에 대한 서비스 요금.

지역구의 규칙, 규정, 결의 또는 조례 위반으로 수돗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여기에 명시된 모든 해당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를 지불할 때까지 수도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6.4.060 부분 결제.

체납 계정의 부분 지불은 받아들여지고 고객의 계정에 입금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 지불은 체납 상태에서 계정을 삭제하는 원인이 되지 않으며 체납 계량기가 꺼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6.4.070 신용불량자 계좌의 서비스 지속에 대한 승인.

해당 지역에 만족할 만한 금융 약정이 수립된 경우, 총지배인 또는 지명자는 체납 계좌에 대한 서비스 지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6.40.080 특별 의료 및 재정 상황.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지역구는 거주 용수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a) 서비스 주소에 거주하는 고객 또는 임차인은 물 공급 중단이 구내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주요 진료 제공자로부터 인증을 제출합니다;
- (b) 고객이 일반적인 청구 주기 내에 지불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정상적인 청구주기 동안 고객이 재정적으로 지불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
 - (1) 고객 가정의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General Assistance, Medi-Cal,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 Program 또는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 Program(여성,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캘리포니아 특별 영양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은 일반적인 청구 주기 동안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2) 고객은 위증시 처벌을 받음으로써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 미만임을 선언합니다.
- (c) 고객은 연체료와 관련하여 연장, 상각 또는 대체 지급 일정을 포함한 대체 지급 약정을 기꺼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의 경우, 구는 (1) 연장, (2) 미지급 잔액의 상각 또는 (3) 대체 지급 일정 중 하나를 해당 구역에서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총괄 관리자 또는 지명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문서, 지역의 지불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지불 방식을 선택합니다. 총괄 관리자 또는 지명자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과도한 수난을 피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문서를 수령하면, 구는 7 일 이내에 문서를 검토한다 : (1) 해당 구역에서 선택한 대체 지불

약정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의 서명된 계약서에 해당 대체 약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2) 추가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합니다. (3) 고객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구역은 본 조에 따라 대체 지불 약정을 받은 고객이 60 일 동안 대체 지불 약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60 일 동안 수도 서비스에 대한 현재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구는 서비스 중단 최소 5 영업일 전에 서비스 주소에 서비스 해제 의사를 최종 통지합니다. 최종 통지서에는 해당 지역의 조사 또는 검토 자격이 고객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6.4.090 재연결 수수료 제한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의 가계 소득을 나타내는 거주 고객의 경우, 해당 지역은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연결 수수료를 50 달러로, 비영업 시간 동안에는 150 달러로 제한합니다. 한도는 해당 지역의 실제 연결 수수료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온타리오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정상 및 사후 시간에 대한 현재 재연결 수수료 금액은 섹션 6.15.040 및 6.15.050 에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가계 수입의 연방 빈곤선이 200 % 미만인 것으로 가정 고객을 간주합니다

(a) 누구든지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충 보안 소득 / 주 보충 지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구성원이면 현재 수령인입니다. (b) 고객은 위증시 처벌을 받음으로써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 미만임을 선언합니다.

6.40.100 서비스 재설치.

미지급으로 연결이 끊긴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고객은 연결 해제 수수료, 이자 또는 벌칙을 포함한 현재 및 과거의 유료 수도 요금, 6.15.050 섹션의 제한에 따른 재연결 수수료, 그리고 해당 구가 요구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는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불 후 다음 정기 근무일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복원합니다. 구청 직원 이외의 사람이 또는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수도 서비스는 구내 시설에 손상을 입히고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단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상은 고객 또는 재산 소유자의 책임이며, 이러한 손해가 지불될 때까지 서비스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6.40.105 영업 시간 이후 서비스 다시 설정.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 시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복구된 서비스는 금요일, 주말 또는 공휴일에 언제든지 6.150.050 섹션의 제한에 따라 연결 후 요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이 업무 시간 후 재접속 수수료를 통보 받고 수수료를 인정하고 다음 영업일 오전 7 시 30 분 이전에 해당 구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는 서비스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 재연결 수수료는 사무실에서 재접속 시 요청 시 또는 정규 업무 시간 후 요청 시 다음 영업일 오전 7 시 30 분까지 지불해야 하며, 지불 약정의 일환으로 나중에 지불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전화에 응답하는 구청 직원은 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다음 영업일 오전 7 시 30 분 이전에 해당 구에 연락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제거된 수량계가 있는 서비스는 몇 시간 후에 다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용수 서비스가 새 계정을 위한 것이고 구가 새 계정 소유주로부터 용역 설정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아직 계정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영업 시간 이후에 서비스를 복구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영업일 오전 7 시 30 분 이전에 구에 연락하여 수도 계정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좌 수수료를 지불하고, 애프터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등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날 12 시에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것입니다.

고객이 영업일 오전 7 시 30 분까지 구청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기 영업 시간 이후에 복구된 서비스는 고객이 사후 서비스를 켜고 서명할 때 반드시 수행하도록 약속함에 따라 추가 통지 없이 연결이 끊어집니다.

6.40.110 질문 및 지원.

수도 요금 청구서 또는 분리에 대한 문의나 지원은 해당 지역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760) 365-83333

고객은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직접 구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6.40.115 수자원 서비스 정책의 중단, 정책의 복사본.

6.05 장, 6.35 장 및 6.40 장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6 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고객이 구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정책 사본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구는 요청 시 정책 사본을 e-메일로 보내거나 구청 사무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이 우편으로 부치는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구역에서 우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지만 문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6.40.120 연례 보고.

연간 미납 급수 서비스 중단 건수는 해당 지역 웹사이트에 보고되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도 보고됩니다.